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후취 수납계약서

가맹점 명(가맹점번호) : _____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과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함)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비씨카드” 혹은 “비씨카드”의 회원사/고객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발생한 카드매출에 대해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수수료 정산방식을 “후취”로 변경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가맹점”의 신용판매 내역 및 결제 내역을
매출표를 접수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Lay-Out에 의해 수록 후 VAN망을 통하여
당사로 접수,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
- EDC(Electronic Data Capture) :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판매의
거래승인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매출표 접수 절차 없이 거래승인 데이터가
매출표 접수로 간주되는 방식(자동청구 방식)
- 부가통신업자(VAN) : “가맹점”과 “비씨카드”의 데이터 전송방식에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EDI를 중계 하는 제3당사자

제3조 (신용판매 범위)

- 본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의 회원사/고객사가 발급한 신용/직불/선불카드
(이하 “대상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는데 한한다.
- 가맹점수수료 후취 정산 대상 매출은 “가맹점”이 “신청서” 상 명시한 대상
수납 건에 대해 “대상카드”로 결제한 건에 한한다.
- 전 항의 수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과 “비씨카드”는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제4조 (수수료율)

-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후취 정산 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
비씨카드”가 “가맹점”에게 별도 통지한 신용/직불 카드 수수료율로 정한다.
- 가맹점 수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될 경우 동 수수료는 “가맹점” 과 “비씨카드”
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5조 (대금결제 및 수수료의 청구)

-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방식은 EDC 또는 EDI
방식으로 하기로 한다.
- EDC방식에 의하여 거래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 승인 받은 시점을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간주하며 “비씨카드”는
동 승인내역의 접수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거래대금 전액을 “가맹점”의
결제대금 계좌로 입금한다.
- EDI방식의 경우 EDI 매입데이터 접수일을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간주하며, “비씨카드”는 동 매입데이터의
접수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거래대금 전액을 “가맹점”의 결제대금 계좌로
입금한다.

- “비씨카드”는 제4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비씨카드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 익월 2영업일 이후 청구하며 “가맹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된 수납금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비씨카드”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 한다.
- “비씨카드”가 청구한 가맹점 수수료가 전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신용판매 대금을 입금보류하고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발생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과
“비씨카드”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유출의 금지)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특약은 “가맹점”과 “비씨카드”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 또는 “비씨카드”가 본 특약의 주요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가맹점” 또는 “비씨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1)과 2)에 의거 특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지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준 용)

본 특약은 “비씨카드”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씨카드”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

작성일

년

월

일

〈가맹점〉
사업장 주소
가맹점명(상호)
대표자 성명

(인)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



비씨카드 가맹점 수수료 후취 수납계약서

가맹점 명(가맹점번호) : _____ ()
(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와/과 비씨카드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함)는
가맹점 약관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특약은 “비씨카드” 혹은 “비씨카드”의 회원사/고객사에서 발급한
카드로 발생한 카드매출에 대해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수수료 정산방식을 “후취”로 변경하는데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가맹점”의 신용판매 내역 및 결제 내역을
매출표를 접수하지 않고 별도 정해진 Lay-Out에 의해 수록 후 VAN망을 통하여
당사로 접수,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
- EDC(Electronic Data Capture) : “가맹점”에서 발생한 신용판매의
거래승인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매출표 접수 절차 없이 거래승인 데이터가
매출표 접수로 간주되는 방식(자동청구 방식)
- 부가통신업자(VAN) : “가맹점”과 “비씨카드”의 데이터 전송방식에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EDI를 중계 하는 제3당사자

제3조 (신용판매 범위)

- 본 특약에서 정하는 범위는 “가맹점”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의 회원사/고객사가 발급한 신용/직불/선불카드
(이하 “대상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는데 한한다.
- 가맹점수수료 후취 정산 대상 매출은 “가맹점”이 “신청서” 상 명시한 대상
수납 건에 대해 “대상카드”로 결제한 건에 한한다.
- 전 항의 수납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과 “비씨카드”는
사전에 협의토록 한다.

제4조 (수수료율)

-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후취 정산 시,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
비씨카드”가 “가맹점”에게 별도 통지한 신용/직불 카드 수수료율로 정한다.
- 가맹점 수수료의 변동사유가 발생될 경우 동 수수료는 “가맹점” 과 “비씨카드”
의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제5조 (대금결제 및 수수료의 청구)

-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방식은 EDC 또는 EDI
방식으로 하기로 한다.
- EDC방식에 의하여 거래승인을 받았을 경우, 그 승인 받은 시점을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간주하며 “비씨카드”는
동 승인내역의 접수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거래대금 전액을 “가맹점”의
결제대금 계좌로 입금한다.
- EDI방식의 경우 EDI 매입데이터 접수일을 “가맹점”이 “비씨카드”에게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한 시점으로 간주하며, “비씨카드”는 동 매입데이터의
접수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거래대금 전액을 “가맹점”의 결제대금 계좌로
입금한다.

- “비씨카드”는 제4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비씨카드 가맹점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 익월 2영업일 이후 청구하며 “가맹점” 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입금된 수납금액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비씨카드”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입금 한다.
- “비씨카드”가 청구한 가맹점 수수료가 전항에 정해진 기한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신용판매 대금을 입금보류하고 이를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 (손해발생의 책임)

본 특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과
“비씨카드” 중 그 위반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유출의 금지)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위반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는 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특약의 변경 및 해지)

- 본 특약은 “가맹점”과 “비씨카드”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 특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맹점” 또는 “비씨카드”가 본 특약의 주요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 본 특약과 관련하여 “가맹점” 또는 “비씨카드”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 1)과 2)에 의거 특약을 해지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계약해지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제9조 (특약의 유효기간)

본 특약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의 특약 갱신 여부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본 특약은 “비씨카드”가맹점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비씨카드” 가맹점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 특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특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가맹점”과 “비씨카드”는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서는 카드사 보관용 1부만 제출한다.

작성일

년

월

일

〈가맹점〉
사업장 주소
가맹점명(상호)
대표자 성명

(인)

〈비씨카드〉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비씨카드㈜
비씨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 영 우

